

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중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2. 12. 5.

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

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제25호

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(안)

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에 제7호의6부터 7호의7까지,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6.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운영

7의7.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운영

9의2. 지역 내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 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 · 7의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·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0. · 12. (생 략)</p>	<p>제29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7의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의6.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운 영</u></p> <p><u>7의7.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운영</u></p> <p>8. ·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의2. 지역 내 영상문화 및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</u></p> <p>10. · 12. (현행과 같음)</p>